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69
----------	------

2013년 7월 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18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3년 7월 5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

가. 제안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 사항과 조례 운용상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8조제5항)
-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초안을 재작성

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최종 “협의를내용을 통보 받기 전” 사업계획 변경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 관련 현실적으로 개선함(안 제9조)

-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승인기관이 조치를 명하게 함으로써 협의내용 이행을 강화함(안 제20조제5항)
- 개발사업의 최종 준공검사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확인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20조제8항)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결조건인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고 심의위원 제척 회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현실적으로 개선함(안 제22조제6항, 제7항, 제8항)
- 기존 중요 조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누락되어 “공사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 일부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및 과태료를 조정함(안 제34조제1항,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후 조치사항반영

조문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조치(안)
제20조(협약내용의 관리·감독)	【개선권고】 제20조에서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를 ‘승인 등을 받은 사업자’로 용어변경	【반영】 협약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 및 공사중지 명령은 사업승인을 이미 받은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를 ‘승인 등을 받은 사업자’로 문맥 개선
	【개선권고】 제20조 각항(제1항~8항) 배열에 대한 적정여부 재검토	【반영】 제20조 제1항~제8항에 대하여 “①협약내용의 사업계획 반영, ②협약내용 이행, ③준공”의 협약내용 관리·감독 흐름과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 후 공사중지 명령”의 조치 순서에 맞게 배열 개선

- (2) 조직담당관(위원회) : 위원회 관련 협의 완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협의 완료
-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 : 갈등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13. 2. 14. ~ 3. 6.)결과 :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
-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3) 비용추계 등 자료 : 별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안석수)

가.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안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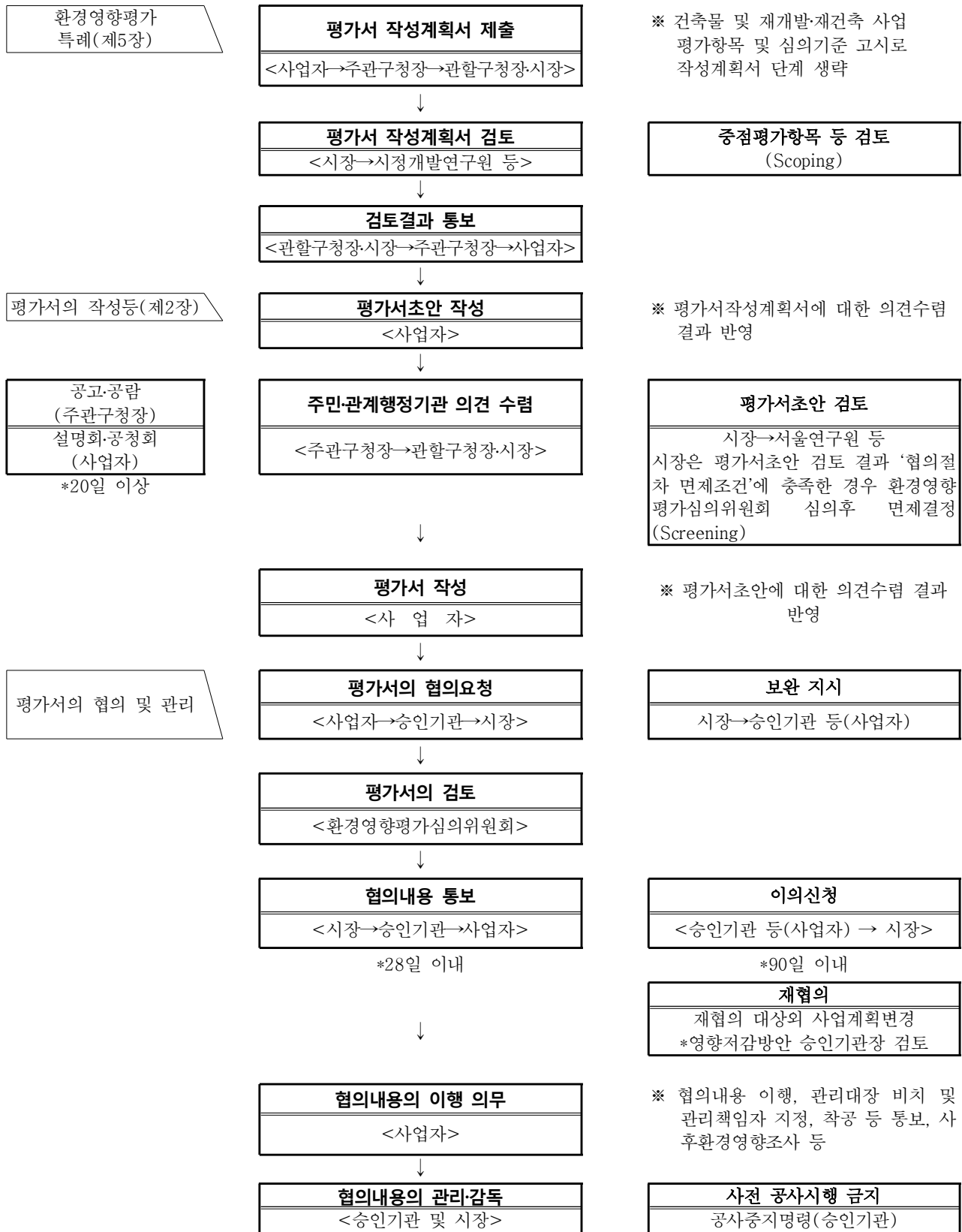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행정계획 수립(정책계획, 개발기본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사전환경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
-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보다 작은 규모의 11개 분야 26개 사업에 대하여 자체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¹⁾, 세부 절차는 <그림 1>과 같음.(※심사보고서 p. 5)
- 「환경영향평가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정책법」에 따라 실시하던 사전환경성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개편하여 도입하였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와 반영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음.

1)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심사보고서 p.11)



<그림 1>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흐름도

-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검토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지금까지 조례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 주요내용 검토의견

1) 상위법 및 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

(안 제2조제3호, 안 제26조제2항)

-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용어인 “협의기준”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기본개념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3호)
- 안 제2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한 것은 2012년 7월 26일 다른 조례²⁾의 부칙으로 이미 개정되어 개정지시문은 효력이 없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강화 (안 제8조제5항)

-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단계를 살펴보면, 평가서 작성계획서 → 평가서 초안 → 주민·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 평가서 작성 및 제출(협의 요청) → 평가서 검토 → 협의내용 통보 → 협의내용 이행 →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등이 있음.
-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설명

2)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가 개정되면서, 부칙으로 서울연구원으로 개정되었음

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음.

- 안 제8조제5항에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와 반영여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평가서 초안 재작성 및 주민의견 재수렴 시기 변경(안 제9조)

-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평가서를 작성한 후 협의내용을 통보받기 이전까지 사업규모가 30%이상 증가하는 등의 중요한 사업변동이 있는 경우 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하고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음.

4)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 근거 신설(안 제20조제5항)

-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사업의 공사중지를 명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로 하여금 협의내용의 이행을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임.

5) 준공검사시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 신설(안 제20조제8항)

- 개발사업의 최종 준공검사시 승인기관장 등 및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감독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임.

6)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 의결정족수 및 제척사유(제22조제6항, 제7항)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조건인“회의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회의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개선하고, 심의위원의 제척·회피사유를 신설한 것은 위원회 운영을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과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임.

7)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및 정비(안 제34조)

-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중지를 명령받은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 강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8) 환경영향평가 항목 조정(안 별표2)

-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데, 사회경제환경분야의 세부 평가항목 중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분야는 다른 영향평가제도와 중복되는 항목이므로 삭제하는 것임.

※ 참고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3.~4. (생략)
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2.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

<참고자료 1>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개정사항

구분	기 준	개 정
법률의 명칭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평가 구분	○ 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 정책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지역적 범위가 넓고, 기본방향이나 지침적 성격의 계획
	○ 사전환경성검토(개발사업)	○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 개발기본계획: 재정비촉진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 계획
	○ 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 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 - 행정계획 구분없이 동일한 절차 및 주민의견수렴	○ 정책계획은 주민의견수렴 대신 전문가 의견수렴 으로 대체 ○ 개발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수준 으로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강화 ※ 주민요구 시 공청회 개최 의무화, 협의전 주요사항 변경시 주민의견 재수렴 실시 등
평가관련 위원회	○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각각 운영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대행	○ 없음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아무나 작성 대행)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 평가업자 작성 의무화
평가대행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 환경영향평가업자
	- 종별 구분 없음	- 1종 : 종전 평가대행자 - 2종 신설 : 자연생태조사평가 전문
평가사 도입	○ 없음 (대기, 수질 등 매체별 기술자격자)	○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도입, 평가서 작성 총괄
벌칙	○ 사전환경성검토 부실·허위작성 등의 처분규정 없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허위작성 및 협의내용 미이행 등 벌칙 신설

5.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어정의가 새롭게 되었는데 조례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 답변 : 큰 틀에서는 달라진 것은 없어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실무적으로 조례내용에 “승인 등”이라는 약어가 사용되고 있어 이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함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8. 수정안 요지

- 환경영향평가의 개념에 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은 다른 조례의 부칙으로 “서울연구원”으로 개정된 바 있으므로, 안 제26조제2항을 현행과 같이 함.

9.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69
----------	------------

제안년월일 : 2013년 7월 5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환경영향평가의 개념에 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은 다른 조례의 부칙으로 “서울연구원”으로 개정된 바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함.

2. 주요 골자

-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함.(안 제2조제1호)
-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은 다른 조례의 부칙으로 “서울연구원”으로 개정된 바 있으므로, 안 제26조제2항을 현행과 같이 함.

3. 참고사항: 생략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안 제26조제2항을 현행과 같이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42조 ----- ----- ----- ----- ----- ----- ----- -----</p>	<p>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제2조(정의) ----- ----- ----- 1.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 ----- ----- 1. “<u>환경영향평가</u>”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p>
<p>2. (생략)</p> <p>3. “<u>협의기준</u>”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제시하는 등 「<u>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u>」이 정하는 경우로서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협의내용을 반영한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u>사업계획등</u>”이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p>	<p>2. (현행과 같음)</p> <p>3. ----- <u>사업의 시행으로</u>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u>환경정책기본법</u>」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시장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p>	<p>2. (개정안과 같음)</p> <p>3.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인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이 확정된 경우 그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치를 말한다.</p> <p>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p> <p>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p> <p>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p> <p>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p> <p>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p> <p>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 중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p> <p>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설 등</p> <p>4. (생략)</p> <p>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p> <p>① (생략)</p> <p>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p>	<p>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p> <p>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p> <p>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p> <p>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p> <p>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p> <p>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p> <p>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p> <p>4. (현행과 같음)</p> <p>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4. (개정안과 같음)</p> <p>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p> <p>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1.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으로 하되, 대기는 「서울특별시 환경기준 조례」 별표 1의 환경기준</p> <p>2. <u>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u></p> <p>3. (생략)</p> <p>4. <u>지역별 오염총량기준</u></p> <p>5. (생략)</p> <p>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생략)</p> <p>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u>행정계획</u> 수립 단계에서 「<u>환경정책기본법</u>」 제25조에 따른 <u>사전환경성검토</u>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 <u>사전환경성검토서</u>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p> <p>제8조(의견수렴 등) ①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u>행정계획</u> 수립 단계에서 <u>사전환경성검토</u>를 협의할 때에 「<u>환경정책기본법</u>」 제25조의5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이 <u>규칙이 정하는 사유</u>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으</p>	<p>1. ----- 제12조 -----</p> <p>2. 「<u>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u>」 제4조제4항에 따른 <u>도시생태 현황</u></p> <p>3. (현행과 같음)</p> <p>4. 「<u>대기환경보전법</u>」, 「<u>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u>」 등에 따른 <u>지역별 오염총량기준</u></p> <p>5. (현행과 같음)</p> <p>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개발기본계획</u> ----- 「<u>환경영향평가법</u>」 제16조에 따른 <u>전략환경영향평가</u> ----- <u>전략환경영향평가서</u> -----.</p> <p>제8조(의견수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u></p> <p>⑥ ----- <u>개발기본계획</u> ----- 「<u>환경영향평가법</u>」 제13조 -----</p>	<p>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8조(의견수렴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p> <p>⑤ (개정안과 같음)</p> <p>⑥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로 대체할 수 있다.</p> <p>제9조(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등) 사업자는 제8조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제13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나 시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작성과 의견수렴을 다시 하여야 한다.</p> <p>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평가서, 제8조제2항에 따른 평가서초안,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제19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결과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평가대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시킬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 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신고)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등록된 주소지가 서울특</p>	<p>-----.</p> <p>제9조(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등) ----- -----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 -----.</p> <p>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 ----- ----- ----- ----- ----- ----- ----- ----- 환경영향평가업자(----- “평가업자”--)----- -----.</p> <p>② ----- 평가업자----- 평가서등----- ----- ----- ----- -----.</p> <p>제11조(환경영향평가업자 신고) ① ----- ----- 제54조----- ----- 환경부 ----- -----</p>	<p>제9조(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등) (개정안과 같음)</p> <p>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11조(환경영향평가업자 신고) ①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별시인 대행자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하는 평가대행자는 대행계약일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평가대행자 신고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평가대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12조(사업자와 평가대행자 준수사항) ① 사업자와 평가대행자는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규칙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서등을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와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3. 평가대행자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4. (생략)</p> <p>③ (생략)</p> <p>제16조(이의신청)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협의내용을</p>	<p>----- 평가업자 -----</p> <p>----- 평가업자 -----</p> <p>-.</p> <p>② 평가업자 -----</p> <p>-----.</p> <p>③ 평가업자 -----</p> <p>----- 제24조 -----</p> <p>-----.</p> <p>제12조(사업자와 평가업자 준수사항) ① ----- 평가업자 -----</p> <p>-----.</p> <p>② -----</p> <p>----- 평가업자 -----</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평가업자 -----</p> <p>-----.</p> <p>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조정요청) ① -----</p> <p>-----</p> <p>-----</p> <p>-----</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제12조(사업자와 평가업자 준수사항)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1. ~ 2. (개정안과 같음)</p> <p>3. (개정안과 같음)</p> <p>4. (개정안과 같음)</p> <p>④ (개정안과 같음)</p> <p>제16조(조정요청) ①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규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는 해당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 --- 협의내용의 조정을 요청- ----- ----- 조정을 요청하여야 ----- ② ----- 조정요청- ----- 조정요청 ----- ----- --- 조정요청 ----- ----- ----- ③ ----- ----- --- 조정요청----- ----- ----- ----- 조정요청 ----- ----- -----</p>	<p>-----</p> <p>② (개정안과 같음)</p> <p>-----</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 ④ (생략) <신설> ⑤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⑥ (생략) <신설></p>	<p>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⑥ ----- 받은 ----- 제5항 ----- ----- ----- ⑦ (현행과 같음) ⑧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p>	<p>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⑦ (개정안과 같음) ⑧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① ~ ④ (생략)</p> <p>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략)</p> <p>2. 제16조에 따른 <u>이의신청</u></p> <p>3.~5. (생략)</p> <p>⑥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구성원 <u>과반수</u>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u>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필요하면 시장에게 공동으로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u></p> <p>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조정요청</u></p> <p>3.~5. (현행과 같음)</p> <p>⑥ ----- -----<u>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u>----- -----.</p> <p>⑦ <u>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u></p> <p>1. <u>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전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u></p> <p>2. <u>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전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⑧ <u>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u></p>	<p>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⑥ (개정안과 같음)</p> <p>⑦ (개정안과 같음)</p> <p>⑧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⑦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6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 등) ① (생략) ② ----- ----- --- 서울연구원 ----- ----- ③ ~ ④ (생략)</p> <p>제29조(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u>사회·경제</u>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평가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 ③ (생략)</p> <p>제30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한 <u>평가대행자</u>, 전문가, 전문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4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1. 제20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을 받고 이</p>	<p>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회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 <u>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p> <p>⑨ ----- ----- -----</p> <p>제26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서울연구원 ----- ----- 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29조(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등) ① ----- ----- ----- <u>사회·경제환경</u> ----- ----- -----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0조(비밀준수 의무) ----- ----- --- <u>평가업자</u> ----- ----- ----- -----</p> <p>제34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u>제20조제6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p>⑨ (개정안과 같음)</p> <p>제26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u>현행과 같음</u>)</p> <p>③ ~ ④ (개정안과 같음)</p> <p>제29조(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③ (개정안과 같음)</p> <p>제30조(비밀준수 의무) (개정안과 같음)</p> <p>제34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u>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u> <u>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u> <u>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u> <u>경보전방안의 강구·검토 등의</u> <u>절차를 끝내지 아니하고 공사</u> <u>를 시행한 자</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② (생략) 1.~3. (생략)</p> <p>③ (생략) 1.~5. (생략)</p> <p>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과 태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 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4조를 위반하여 환경영 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 고 공사를 한 자</p> <p>2. 제20조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 또는 조치요청을 받 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p> <p>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자</p> <p>4.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 으로 작성한 자</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p> <p>⑤ ----- 제4항 ----- ----- -----.</p> <p>⑥ 제5항 ----- ----- -----.</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 1.~3. (개정안과 같음)</p> <p>④ (개정안과 같음) 1.~5. (개정안과 같음)</p> <p>⑤ (개정안과 같음)</p> <p>⑥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4조 및 제13조 관련)			[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4조 및 제13조 관련)			[별표 1] (개정안과 같음)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	<p>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7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p> <p>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중 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p> <p>1) 유통업무설비로서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2) 주차장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3) 시장으로서 부지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중 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p>	<p>○ (생략)</p> <p>○ (생략)</p> <p>○ (생략)</p> <p>○ (생략)</p> <p>○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국민임대</p>	1. 도시의 개발	<p>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p> <p>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p> <p>1)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2)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3) 시장으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p>○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보금</p>	

현행			개정안			수정안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p>단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아.~자. (생략)</p>	<p>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 (생략)</p> <p>○ (생략)</p> <p>○ (생략)</p>		<p>택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아.~자. (현행과 같음)</p>	<p>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의 승인 전</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p>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7만5천㎡</p>	<p>○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 (생략)</p> <p>○ (생략)</p>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p>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p>	<p>○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p>이상 15만㎡ 미만인 것. 다만, 산업기술 단지를 같은법 제6조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 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다만, 산업기술 단지를 같은법 제6조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 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3. 에너지 개발	<p>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생략) 나. (생략)</p> <p>다.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중 저장용량이 5만kl 이상 10만kl 미만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p>	<p>○ (생략)</p> <p>○ (생략)</p> <p>○ (생략)</p>	3. 에너지 개발	<p>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p> <p>다.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5만kl 이상 10만kl 미만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4. 도로의	<p>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7조, 「국토의 계획</p>	<p>○ (생략)</p>	4. 도로의	<p>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p>	<p>○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건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 사업 1)~2) (생략)		건설	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 사업 1)~2) (현행과 같음)		
5. 철도의 건설	「 <u>삭도·궤도법</u> 」 제3조에 따른 <u>삭도·궤도(외줄궤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중 길이 1km 이상 2km 미만인 것</u>	○ 「 <u>삭도·궤도법</u> 」 제4조에 따른 <u>사업허가 전</u>	5. 철도의 건설	「 <u>궤도운송법</u> 」 제2조에 따른 <u>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u> 1) 「 <u>궤도운송법</u> 」 제2조제5호에 따른 <u>삭도의 길이 1km 이상 2km 미만인 것</u> 2) 「 <u>궤도운송법</u> 」 제2조제1호에 따른 <u>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이 2km 이상 4km 미만인 것</u>	○ 「 <u>궤도운송법</u> 」 제4조에 따른 <u>궤도사업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전</u>	
6.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생략)	○ (생략)	6.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7. 관광단지의 개발	가. (생략)	○ 「 <u>관광진흥법</u> 」 제4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 (관광숙박업은 같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	7. 관광단지의 개발	가. (현행과 같음)	○ 「 <u>관광진흥법</u> 」 제4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 (관광숙박업은 같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	

현행			개정안			수정안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p>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중 <u>조성면적 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원 집단시설지구의 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u></p> <p>다. (생략)</p>	<p>는 신고 전</p> <p>○ (생략)</p> <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u>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결정 전</u></p>		<p>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중 <u>사업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u></p> <p>다. (현행과 같음)</p>	<p>는 신고 전</p> <p>○ (현행과 같음)</p> <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u>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u></p>	
8. 산지의 개발	(생략)	<p>○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 (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u></p>	8. 산지의 개발	(현행과 같음)	<p>○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 (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u></p>	
9. 체육시설의 설치	(생략)	○ (생략)	9. 체육시설의 설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10.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 시설의 설치사업 1)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	○ (생략)	10.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 시설의 설치사업 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	○ (현행과 같음)	
1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면적 이 16만5천㎡ 이상 33만㎡ 미만인 것	○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의 승인전,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의 확정 전	1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사업면적 이 16만5천㎡ 이상 33만㎡ 미만인 것	○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의 승인 전,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의 수립 전	
<p><비고> 1.~5. (생략)</p> <p>[별표 2] 환경영향평가 항목(제29조제1항 관련)</p> <p>1. ~ 4. (생략)</p> <p>5. 생활환경분야 가.~마.(생략) 바. 전파장애</p> <p>6. 사회·경제분야 가.~다. (생략) 라. 공공시설 마. 교육 바. 교통 사. 문화재</p>			<p><비고> 1.~5. (현행과 같음)</p> <p>[별표 2] 환경영향평가 항목(제29조제1항 관련)</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생활환경분야 가.~마.(현행과 같음) 바. 전파장애</p> <p>6. 사회·경제환경분야 가.~다. (현행과 같음) 라.~사. (삭제)</p>			<p>[별표 2]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를 “제42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시장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
-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기준
-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 물질의 배출기준

제6조제2항제1호 중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별 오염총량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계획”을 “개발기본계획”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제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행정계획”을 “개발기본계획”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중 “제13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나 시장에게 평가서를 제출

하기 전에"를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평가대행자"를 "평가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대행자"를 "평가업자"로, "환경영향평가서"를 "평가서등"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신고)"를 "(환경영향평가업자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5조"를 "제54조"로,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을 "환경부"로, "대행자" 및 "평가대행자"를 각각 "평가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평가대행자"를 각각 "평가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사업자와 평가대행자 준수사항)"를 "(사업자와 평가업자 준수사항)"로 하고, 같은 조 중 "평가대행자"를 "평가업자"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조정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의를 신청"을 "협의내용의 조정을 요청"로, "이의신청을 하여야"를 "조정을 요청하여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이의신청"을 "조정요청"으로 한다.

제20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받아야 하는"을 "받은"으로, "제1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내

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필요하면 시장에게 공동으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제5항제2호 중 "이의신청"을 "조정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과반수"를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22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제7항과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사회·경제"를 "사회·경제환경"으로 한다.

제30조 중 "평가대행자"를 "평가업자"로 한다.

제3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20조제6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 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자
 - 4.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제34조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제4조 및 제13조 관련)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p>1. 도시의 개발</p>	<p>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p> <p>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p> <p>1)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2)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3) 시장으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 「도시개발법」 제 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p>○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전</p>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p>○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p> <p>○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p> <p>○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p>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p>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 이 경우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p>	<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p> <p>○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p> <p>○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p>
<p>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p>	<p>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p>	<p>○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p>○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p>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p>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3. 에 너 지 개 발</p>	<p>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p> <p>1) 154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p> <p>나.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미만인 것</p> <p>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p>	<p>○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전</p> <p>○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p> <p>○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p>
<p>4. 도 로 의 건 설</p>	<p>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 사업</p> <p>1) 2km 이상 4km 미만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나목·바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2차로 이상으로서 5km 이상 10km 미만의 확장.</p>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전(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허가 전)</p>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5. 철도의 건설	<p>「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p> <p>1) 「궤도운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삭도의 길이 1km 이상 2km 미만인 것</p> <p>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이 2km 이상 4km 미만인 것</p>	<p>○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전</p>
6. 하천의 이용 및 개발	<p>「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같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3km 이상 10km 미만인 것. 다만, 하천의 보수·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방보강공사는 제외한다.</p>	<p>○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에 의한 협의완료 또는 승인전. 다만, 같은법 제87조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전</p>
7. 관광단지의 개발	<p>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중 사업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p>	<p>○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p> <p>○ 「자연공원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결정 전(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에</p>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p>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이 5만㎡이상 10만㎡ 미만인 것 또는 같은법 제1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의 설치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p>	<p>다른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 전)</p> <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p>
<p>8. 산 지 의 개 발</p>	<p>「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산지전용면적이 6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p>9. 체 육 시 설 의 설 치</p>	<p>「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단, 용지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면적이 5천㎡ 이상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p>	<p>○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p>10.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의 설 치</p>	<p>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 시설의 설치사업</p> <p>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 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p>	<p>○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전, 폐기물처리업외의 경우 같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p>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1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사업면적이 16만5천㎡ 이상 33만㎡ 미만인 것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전

〈비고〉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최소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평가서의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가.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
 - 나. 사업 승인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 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르는 때. 다만,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그 개정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 다. 사업의 승인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1)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르면

- 2)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같은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해당 사업의 승인등의 당시 규모보다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라. 이 조례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등을 득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만, 별표 1의 1.도시의 개발란 자.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로 한다.

5. 이 조례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규모가 영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다.

[별표 2]

환경영향평가 항목(제29조제1항 관련)

1. 대기환경분야

가. 기상(미기상 포함) 나. 대기질 다. 악취 라. 온실가스

2. 수환경분야

가. 수질(물순환) 나. 수리·수문

3.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나. 토양 다. 지형·지질

4. 자연생태환경분야

가. 동·식물상 나. 자연환경자산

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나. 소음·진동 다. 위락·경관 라. 일조장해
마. 위생·공중보건 바. 전파장해

6. 사회·경제환경분야

가. 인구 나. 주거 다. 산업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환경영향평가”란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이하 “환경보전방안”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p> <p>2. (생략)</p> <p>3. “협의기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제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협의내용을 반영한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이 확정된 경우 그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치를 말한다.</p> <p>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p>	<p>제1조(목적) ----- 제 42조-----</p> <p>-----</p> <p>-----</p> <p>-----</p> <p>-----</p> <p>제2조(정의) -----</p> <p>-----</p> <p>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시장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p> <p>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p>

현행	개정안
<p>다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p> <p>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 중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설 등</p> <p>4. (생략)</p> <p>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생략)</p> <p>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p> <p>1.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으로 하되, 대기는 「서울특별시 환경기초조례」 별표 1의 환경기준</p> <p>2. <u>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u></p> <p>3. (생략)</p> <p>4. <u>지역별 오염총량기준</u></p> <p>5. (생략)</p> <p>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생략)</p>	<p>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p> <p>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p> <p>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p> <p>4. (현행과 같음)</p> <p>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u>제12조</u> ----- -----</p> <p>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p> <p>3. (현행과 같음)</p> <p>4.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u>지역별 오염총량기준</u></p> <p>5. (현행과 같음)</p> <p>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u>행정계획</u> 수립단계에서 「<u>환경정책기본법</u>」 제25조에 따른 <u>사전환경성검토</u>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 <u>사전환경성검토서</u>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p> <p>제8조(의견수렴 등) ①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u>행정계획</u>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할 때에 「<u>환경정책기본법</u>」 제25조의5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제9조(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등) 사업자는 제8조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u>제13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나 시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u>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작성과 의견수렴을 다시 하여야 한다.</p> <p>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평가서, 제8조제2항에 따른 평가서초안,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제19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결과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u>환경영향평가 대행자</u>(이하 “평</p>	<p>② ----- -- <u>개발기본계획</u> ----- 「<u>환경영향평가법</u>」 제16조에 따른 <u>전략환경영향평가</u> ----- ----- <u>전략환경영향평가서</u> ----- ----- .</p> <p>제8조(의견수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⑥ ----- -- <u>개발기본계획</u> ----- ----- 「<u>환경영향평가법</u>」 <u>제13조</u> ----- ----- ----- .</p> <p>제9조(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등) ----- ----- <u>제15조</u> <u>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u> ----- ----- ----- ----- ----- .</p> <p>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 ----- ----- ----- ----- ----- ----- ----- ----- ----- <u>환경영향평가업자</u>(--- “평</p>

현행	개정안
<p>가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u>평가대행자</u>에게 <u>환경영향평가서</u>의 작성을 대행시킬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 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u>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신고</u>)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u>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u>에 등록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u>대행자</u>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하는 <u>평가대행자</u>는 대행 계약일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u>평가대행자</u> 신고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u>평가대행자</u>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12조(<u>사업자와 평가대행자 준수사항</u>)</p> <p>① 사업자와 <u>평가대행자</u>는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규칙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서등을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와 <u>평가대행자</u>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3. <u>평가대행자</u>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를</p>	<p>사업자”-----)----- -----.</p> <p>② ----- <u>평가업자</u> -- <u>평가서등</u>----- ----- -----.</p> <p>제11조(<u>환경영향평가업자 신고</u>) ① ----- -----</p> <p>제54조 ----- <u>환경부</u> ----- ----- <u>평가업자</u> ----- <u>평가업자</u> ----- -----.</p> <p>② <u>평가업자</u> ----- -----.</p> <p>③ <u>평가업자</u> ----- -- <u>제24조</u> ----- -----.</p> <p>제12조(<u>사업자와 평가업자 준수사항</u>) ① - ----- <u>평가업자</u> ----- ----- ----- -----.</p> <p>② ----- <u>평가업자</u> 자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평가업자</u> ----- -----</p>

현행	개정안
<p>일괄하여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4. (생략)</p> <p>③ (생략)</p> <p>제16조(이의신청)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u>이의</u>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u>이의신청</u>을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u>이의신청</u>을 받은 시장은 <u>이의신청</u>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u>이의신청</u>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u>이의신청</u>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는 해당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u>이의신청</u>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p> <p>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조정요청) ① -----</p> <p>-----</p> <p>-----</p> <p>-----</p> <p>----- <u>협의내용의 조정을 요청</u> -----.</p> <p>----- <u>조정을 요청하여야</u> -----.</p> <p>-----</p> <p>② ----- <u>조정요청</u> -----</p> <p><u>조정요청</u> -----</p> <p>----- <u>조정요청</u> -----.</p> <p>-----</p> <p>③ -----</p> <p>----- <u>조정요청</u> -----</p> <p>-----</p> <p>----- <u>조정요청</u> -----</p> <p>-----.</p>
<p>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⑤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p>	<p>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u></p> <p>⑥ ----- 받은 -----</p> <p>----- <u>제5항</u> -----</p> <p>-----</p> <p>-----.</p>

현행	개정안
<p>⑥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p> <p>① ~ ④ (생략)</p> <p>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략)</p> <p>2. 제16조에 따른 <u>이의신청</u></p> <p>3.~5. (생략)</p> <p>⑥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구성원 <u>과반수</u>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⑦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방법 그 밖</p>	<p>⑦ (현행과 같음)</p> <p>⑧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필요하면 시장에게 공동으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조정요청</u></p> <p>3.~5. (현행과 같음)</p> <p>⑥ ----- <u>과반수</u>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u>과반수</u> -----.</p> <p>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p> <p>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전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p> <p>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전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⑨ -----</p>

현행	개정안
<p>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p>
<p>제29조(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u>사회·경제</u>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p> <p>② ~ ③ (생략)</p>	<p>제29조(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등) ① --</p> <p>-----</p> <p>-----</p> <p>----- <u>사회·경제환경</u> -----</p> <p>-----</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0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한 <u>평가대행자</u>, 전문가, 전문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0조(비밀준수 의무) -----</p> <p>----- <u>평가업자</u> -----</p> <p>-----</p> <p>-----.</p>
<p>제34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p>1. <u>제20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u></p> <p>2. <u>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강구·검토 등의 절차를 끝내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u></p>	<p>제34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u>제20조제6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p>1. <u>제4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u></p> <p>2. <u>제20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u></p> <p>3. <u>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u></p>

현 행	개 정 안
-----	-------

<p>② (생략) 1.~3. (생략)</p> <p>③ (생략) 1.~5. (생략)</p> <p>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p>한 자</p> <p>4.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p> <p>⑤ ----- 제4항 ----- -----.</p> <p>⑥ 제5항 ----- -----.</p>
--	---

[별표 1] [별표 1]

<p>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4조 및 제13조 관련)</p>	<p>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4조 및 제13조 관련)</p>
--	--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	<p>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7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p> <p>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중 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p> <p>1) 유통업무설비로서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2) 주차장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 (생략)</p> <p>○ (생략)</p> <p>○ (생략)</p>
1. 도시의 개발	<p>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p> <p>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p> <p>1)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2)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p>3)시장으로서 부지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중 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중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아.~자. (생략)</p>	<p>○ (생략)</p> <p>○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 (생략)</p> <p>○ (생략)</p> <p>○ (생략)</p>		<p>3)시장으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급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급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아.~자.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p>○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보급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급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p>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중 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p>	<p>○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 (생략)</p>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p>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p>	<p>○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다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p>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법 제6조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 (생략)		<p>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법 제6조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 (현행과 같음)
3. 에너지 개발	<p>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p> <p>1) (생략)</p> <p>나. (생략)</p> <p>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p>	○ (생략) ○ (생략)	3. 에너지 개발	<p>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p> <p>1)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p>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4. 도로의 건설	가. 「도로법」 제2조제1항 제1호 또는 제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 사업 1)~2) (생략)	○ (생략)	4. 도로의 건설	제외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항 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 사업 1)~2)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5. 철도의 건설	「삭도·궤도법」 제3조에 따른 삭도·궤도(외줄궤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중 길이 1km 이상 2km 미만인 것	○ 「 삭도·궤도법 」 제4조에 따른 사업허가 전	5. 철도의 건설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1) 「궤도운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삭도의 길이 1km 이상 2km 미만인 것 2) 「궤도운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이 2km 이상 4km 미만인 것	○ 「 궤도운송법 」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전
6.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생략)	○ (생략)	6.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7. 관광단지의 개발	가. (생략) 나. 「자연공원법」 제2조	○ 「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 (관광숙박업은 같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 (생략)	7. 관광단지의 개발	가. (현행과 같음) 나. 「자연공원법」 제2조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 (관광숙박업은 같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중 조성면적 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원 집단시설지구의 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다. (생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결정 전		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중 사업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다. (현행과 같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8. 산지의 개발	(생략)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 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 의 수립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8. 산지의 개발	(현행과 같음)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의 수립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9. 체육 시설의 설치	(생략)	○ (생략)	9. 체육 시설의 설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0.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중 다음 시설의 설치사업 1)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 시설로서 처리 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	○ (생략)	10.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중 다음 시설의 설치사업 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 시설로서 처리 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	○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1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면적이 16만5천㎡ 이상 33만㎡ 미만인 것	○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u>기본설계</u> 의 승인전,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u>기본설계</u> 의 확정 전	1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u>사업면적</u> 이 16만5천㎡ 이상 33만㎡ 미만인 것	○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u>실시계획</u> 의 승인 전,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u>실시계획</u> 의 수립 전
<p><비교> 1.~5. (생략)</p> <p>[별표 2] 환경영향평가 항목(제29조제1항 관련)</p> <p>1. ~ 4. (생략)</p> <p>5. 생활환경분야 가.~마.(생략) 바. <u>전과장애</u></p> <p>6. <u>사회·경제분야</u> 가.~다. (생략) 라. <u>공공시설</u> 마. <u>교육</u> 바. <u>교통</u> 사. <u>문화재</u></p>			<p><비교> 1.~5. (현행과 같음)</p> <p>[별표 2] 환경영향평가 항목(제29조제1항 관련)</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생활환경분야 가.~마.(현행과 같음) 바. <u>전과장해</u></p> <p>6. <u>사회·경제환경분야</u> 가.~다. (현행과 같음) 라.~사. (<u>삭제</u>)</p>		